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해석 의원)

의안 번호	26-54
----------	-------

발의년월일 : 2026. 4. .

발의자 : 남해석, 장영준, 고병준,
최은하, 홍지광, 한선미,
장정희 의원(7인)

1. 제안이유

홍보대사가 부적절한 활동 등으로 규정 홍보 목적과 달리 구의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평가 절차를 도입하여 홍보대사 운영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홍보대사의 활동 실적, 성과 및 사회적 평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 나.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구의 이익·명예 훼손 금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정치적 목적 활동 금지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적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7조 신설)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6. 4. 6. ~ 4.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위촉)”을 “(위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활동 실적 및 성과, 사회적 평판 등 직무수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연임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구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 ③ 홍보대사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홍보대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촉) ① ~ ③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3조(위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활동 실적 및 성과, 사회적 평판 등 직무수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 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를 연임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u></p> <p><u>제7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 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 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 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구의 명 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u></p> <p><u>③ 홍보대사는 그 직위를 이용 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홍보대사 직무수행 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 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u></p>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생략)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 카. (생략)

2.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홍보대사 활동 평가체계 도입(제3조의2 신설) 및 품위유지 규정(제7조 신설) 관련 사항을 규정함
- 나. 직접적인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의 신규 비용 발생은 크지 않음
- 다. 다만, 연간 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 업무 처리 및 평가 자료 작성 등에 소정의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라. 관련 조문
 - 제3조의2(평가): 연간 평가 실시 및 연임 여부 반영
 - 제7조(품위유지): 품위유지 관련 규정 및 직무수행 관리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안 예산·비용추계서 작성 지침」 제12조제2항 관련
 - 제12조제2항은 조례안에 따른 직접적·명확한 예산 증가가 없는 경우 비용추계서 생략 가능함
 - 본 조례안은 기존 행정체계 내에서 운영 가능한 사항으로 직접적 비용 증가가 미미함

3. 미첨부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 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대사 평가 및 품위유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사항으로, 즉각적·직접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나. 연간 평가 실시와 관련한 행정비용은 기존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 가능하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 다. 추후 평가 기준 및 방법 확정 시, 필요에 따라 별도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홍보미디어과 오현민
연 락 처	02-3153-8262